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1.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2.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상담 전화번호
- <붙임 1> 국외여행허가 처리기준(국외이주 목적 이외)
<붙임 2> 국외여행허가 처리기준(국외이주 목적)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1]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2020년) 24세인 사람(1996년생)**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1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즉, 1996년생인 사람이 앞으로(2021년부터) 출국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고,
- ✓ 이미 국외출국 중인 1996년생인 사람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2021.1.15.안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기준 및 접수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 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

접수기관	관할 지방병무(지)청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신청(접수) 가능 사유	<붙임 1> 참조(국외취업 제외)		<붙임1, 2> 참조
처리기관	관할 지방병무(지)청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2)

- **[병역의무자]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거주 장소(국내, 국외)는 상관없음

○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자에 해당
- **[국외여행허가의무]**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법 제70조)

○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시기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 시기별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 자격

구 분	24세 12월 31일 까지	25세 1월 1일부터
국내 에 있는 병역의무자	○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 출국사실이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연기처리	○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 가능 (출국하기 전에 허가 필요)
국외 에 있는 병역의무자		○ 병무청의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국외 체류 가능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청시기 : 24세 1월 1일~25세 1월 15일

※ 단,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병역법에 의한 나이계산]**
- 관련 근거 : 병역법 제2조 제2항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출생연도 기준으로 나이계산하며,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 나이계산 예시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병역법 상 나이

■ 1996년생의 올해(2020년도) 병역법 상 나이는 “24세”
올해(2020년) - 1996년(출생연도) = 24세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상담전화

구 분	업무 담당		
	24세 이전 출국사유 연기자처리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병무민원상담소	전 화 1588-9090 / 팩 스 1588-8999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10	미국, 호주 02)820-4383 그 외 국가 02)820-4382	02)820-4331 02)820-4333 02)820-4334 02)820-4335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324	051)667-5356	051)667-53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2	053)607-6351	053)607-6352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34	031)240-7296	031)240-7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52	062)230-4259	062)230-4352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6	042)250-4259	042)250-4236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033)240-6285	033)240-6234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06	043)270-1259	043)270-1306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2	063)281-3257	063)281-329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2	064)720-3257	064)720-323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31	055)279-9356	055)279-9231
인천병무지청	032)454-2476	032)454-2496	032)740-2476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2	031)870-0257	031)870-0232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43	033)649-4258	033)649-4243

<붙임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훈령 제1723호, 2020.7.17.일부개정)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가. 병역준비역1),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 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이하 별표 1에서 “특수병과사 관후보생등”이라 한다) 및 법 제 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 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나목에 따 라 허가한다.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가) 1회에 6개월 이내 나) 통틀어 2년 이내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 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 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 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라)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없음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 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 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 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 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 이 경우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 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기동역이 아닌 사람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2. 유학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영 제124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별 제한연령(이하 별표 1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이라 한다)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 월까지 2)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3)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까지	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나)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 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다)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사증 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라)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마)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상급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가)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나)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나. 예술·체육요원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가목의 구비서류와 같음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3. 연수, 훈련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 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2) 1)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의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가)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 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제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나)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 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농업, 해양 및 수산계 학교 재학생 의 실습	농업, 해양 및 수산계 학교 재학자 중 승선 및 해역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5. 선원이나 승무원의 선박 및 항 공기 탑승	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나.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 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음
	다.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음
6. 국외취업	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 명서
	나.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 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 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 기간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 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8. 예술 및 체육 활동	예술·체육요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9.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0.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영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 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3개월 범위에서 한번만	본인의 사유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기 타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개월 범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훈령 제1723호, 2020.7.17.일부개정)

[별표 2]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구 비 서 류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 가족거주사실 확인서(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나.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다.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 범위에서 한번만	나) 체류자격(하가서) 사본(바목의 경우 생략 가능)
	라. 영주권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다)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마목의 경우만 해당)
	마.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바목의 경우만 해당)
	바.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아. 복수 국적자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구 비 서 류
	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3년 범위 내에서 한 번만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등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차.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카. 다목, 라목, 자목, 또는 차목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였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한 전 자원	영 제131조제2호에 따른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37세까지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등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별표2] 제1호 마목부터 아목2)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